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391호(號) 1934(昭和 9)년 12월 29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656호(號)

조선국유철도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할인(割引)함.

1934(昭和 9)년 12월 29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- 1 품 명(品 名) 청어[鮮鯿: 소금에 절인(一鹽) 것을 포함(包含)함]
- 2 발 역(發 驛) 부산(釜山), 포항(浦項)
- 3 착 역(著 驛) 구마산(舊馬山), 마산(馬山), 군북(郡北), 진주(晉州)(이상[以上] 포항발[浦項發]에 한[限]함) 및 대전(大田)보다 먼[以遠] 조선총독부(朝鮮總督府) 철도국선(鐵道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 각(各) 역(驛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륜(賃 率) 4천톤(千噸) 이상(以上) 탁송(託送)의 경우
조선총독부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 내(內) 보통임륜(普通賃率)의 1할(割) 5푼(分) 감(減)
6천톤(千噸) 이상(以上) 탁송(託送)의 경우
동(同) 2할(割) 5푼(分) 감(減)
- 6 기 간(期 間) 1934(昭和 9)년 12월 29일부터
1935(昭和 10)년 4월 15일까지
- 7 기 사(記 事) 가 소정임륜(所定賃率)에 의(依)해 전기(前記) 수량(數量) 이상(以上)을 탁송(託送)한 자(者)에 대(對)해 이미 기수운임(既收運賃)과 본(本) 임륜(賃率)에 의(依)한 운임(運賃)과의 차액(差額)을 할려(割戻)하는 것으로 함.
나 본(本) 화물(貨物)에 대(對)한 운임계산(運賃計算) 최저톤수(最低噸數)는 20톤(噸)으로 함.